

1998. 4. 24

1998年度 第1回 忠清北道 追加更正豫算案

檢 討 報 告 書

(社會福祉局 所管)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목 차

I. 예산안 규모	2
1. 일반회계	2
<표1> 도본청 일반회계 예산안과의 비교	
<표2> 성질별 증감규모 (사회복지국소관)	
2. 특별회계	4
<표3>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증감규모	
II. 예산안 주요내역	5
<표4> 국비지원사업 증감내역 (사회복지국소관)	
<표5> 도비지원사업 증감내역 (사회복지국소관)	
III. 검토의견	10

I . 豫 算 案 規 模

1. 一般會計

□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
경정예산안 규모는

- 741억 16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 8,267만원 5천원
대비 2.0%인 14억 1,89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,
도본청 일반회계 대비 10.4%를 점유하고 있음
- 도본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
7,118억 8,72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.5%의 감소율을
보이고 있음

<표 1> 도본청 일반회계 예산안과의 비교

<단위 : 천원>

구 분	예 산 안 (%)		기정예산액 (%)		비교증감 (%)	
도 본 청	711,887,295	100	722,453,922	100	▲10,566,627	▲1.5
보건환경국	63,848,413	9.0	75,052,796	10.4	▲11,204,383	▲14.9
사회복지국	74,101,658	10.4	72,682,675	10.1	1,418,983	2.0
보건환경 연 구 원	2,242,310	0.3	2,390,670	0.3	▲148,360	▲6.2

□ 기정예산액 대비 성질별 증감률은

- 인건비 7.9% 감액, 물건비 10.5% 감액, 자본지출 20.7% 증액
내부거래 6.8%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.0% 증액되었음
- 인건비 및 물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삭감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
에 따라 감액조정된 것이며, 자본지출은 국비지원사업의 조정
에 따라 조정된 것임
- 내부거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
도비부담 전출금이 감액된 것임

<표 2> 성질별 증감규모 (사회복지국소관)

<단위 : 천원>

구 분	예 산 액 (%)		기정예산액 (%)		비교증감 (%)	
사회복지국	74,101,658	100	72,682,675	10.1	1,418,983	2.0
인건비	285,924	0.4	310,501	0.4	▲24,577	▲7.9
물건비	372,243	0.5	416,119	0.6	▲43,876	▲10.5
이전경비	63,144,089	85.2	62,010,886	85.3	1,133,203	1.8
자본지출	4,527,3176	6.1	3,750,596	5.2	776,721	20.7
융자및출자	0	-	0	-	0	-
보전재원	0	-	0	-	0	-
내부거래	5,772,085	7.8	6,194,573	8.5	▲422,488	▲6.8
예비비및기타	0	-	0	-	0	-

2. 特別會計

□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

- 277억 3,87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2,824만 2천원 대비 5억 8,950만 3천원이 감액되어 2.1%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
- 세입중 국비보조금 감액과 이에따른 도비전입금이 감액되었으며, 이에따라 세출중 의료보호비도 감액조정되었음

<표3>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증감규모

<단위 : 천원>

구 분	예 산 안 (%)		기정예산액 (%)		비교증감 (%)	
<세 입>	27,738,739	100	28,328,242	100	▲589,503	▲2.1
순세계잉여금	202,813	0.7	179,877		22,936	12.8
전 입 금	5,472,085	19.7	5,594,573		▲122,488	▲2.2
국고보조금	21,888,341	78.9	22,378,292		▲489,951	▲2.2
<세 출>	27,738,739	100	28,328,242	100	▲589,503	▲2.1
경상경비	12,427	0.0	13,874		▲1,447	▲10.4
의료보호비	27,459,407	99.0	28,064,146		▲604,739	▲2.2
예 비 비	266,905	1.0	250,22273		16,683	6.7

Ⅱ. 豫算案 主要内譯

1. 一般會計

가. 국비지원사업으로

- 보건복지부소관 국비보조사업 25개사업 중
 - 신규사업 3, 증액조정 8, 전액삭감 4, 감액조정 10개사업임
- 중앙기금(사회복지사업기금) 지원사업 10개사업 중
 - 신규계상 5, 전액삭감 2, 감액조정 3개사업임

나. 도비지원사업으로

- 도비보조사업은 2개사업으로 감액계상되었음
- 기타사업은 3개사업으로서
 - 신규계상 1, 증액조정 1, 감액조정 1개사업임
- 사회단체보조금은 4종으로서
 - 신규계상 3, 증액계상 1종임
- 기금적립금은 3개사업으로 감액조정되었음

<표 4> 국비지원사업 증감내역 (사회복지국소관)

() 내는 기정예산액임

<단위 : 천원>

구 분	국 비 (%)	도 비 (%)	비 고
◆ 국비보조사업			
<보건복지부 소관>			
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	(76,345) 77,172 =779	70	(32,720) 33,053 =333
사회복지관 운영	(144,000) 157,680 =13,680	20	시군비 60% 기타 20%
주간및단기보호시설 운영	(30,360) 31,407 =1,047	80	(7,590) 7,852 =262
장애인시설 운영	(3,252,413) 3,988,536 =736,123	70	(1,393,891) 1,709,372 =315,481
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(※전액삭감)	▲33,600	70	▲14,400
장애인시설 기능보강	(577,622) 587,816 =10,194	50	(577,622) 587,816 =10,194
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(※신규사업)	415,206	100	
저소득층취로사업 지원 (※신규사업)	660,000	100	
노인복지시설 운영	(843,653) 1,144,104 =300,451	70	(180,783) 245,165 =64,382
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	(579,434) 557,754 =▲21,680	80	(72,429) 69,719 =▲2,710
가정봉사원 양성사업	(8,800) 7,184 =▲1,616	40	시군비 60%
경로당 운영비	(1,124,760) 911,804 =▲212,956	70	(241,020) 195,386 =▲45,634

() 내는 기정예산액임

<단위 : 천원>

구분	국비 (%)	도비 (%)	비고
경로당 난방비	(468,650) 431,725 =▲36,925	70	(100,425) 92,512 =▲7,913 15 시군비 15%
부가가정 지원	(54,734) 52,346 =▲2,388	80	시군비 20%
치매요양시설 장비보강	(250,000) 225,000 =▲25,000	50	(125,000) 112,500 =▲12,500 25 시군비 25%
부랑아시설 운영	(112,469) 150,772 =38,303	70	(24,100) 32,308 =8,208 15 시군비 15%
아동복지시설 운영	(1,012,529) 1,132,633 =120,104	67.9	(220,400) 268,220 =47,820 16.1 시군비 16.1%
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	(578,597) 557,754 =▲20,843	80	(72,324) 69,719 =▲2,605 10 시군비 10%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	(201,195) 117,166 =▲84,029	50	(100,597) 58,583 =▲42,014 25 시군비 25%
보육시설 운영	(6,924,492) 6,825,232 =▲99,260	50	(2,960,044) 2,916,742 =▲43,302 21.4 시군비 21.4%, 기타 7.3%
모자복지시설 수용보호	(91,974) 88,584 =▲3,390	80	시군비 20%
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 (※전액 삭감)	▲143,908	80	시군비 20%
저소득모자가정 실고생자녀 학비 (※전액 삭감)	▲104,576	80	▲658 0.5 시군비 19.5%
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(※전액 삭감)	▲30,660	80	▲132 0.3 시군비 19.6%
저소득모자가정 지원 (※신규사업)	267,918	80	시군비 20%

() 내는 기정예산액임

<단위 : 천원>

구 분	국 비 (%)	도 비 (%)	비 고
<중앙기금지원사업>			
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(※전액 삭감)	▲15,250 50		시군비50%
아동복지시설 난방개보수 (※신규사업)	20,000 50	10,000 25	시군비 25%
아동복지시설 담장설치비 (※신규사업)	15,250 50	7,625 25	시군비 25%
시설아동 전세금 (※신규사업)	7,500 50	3,750 25	시군비 25%
저소득층등거부부 결혼비용	(2,880) 2,490 =▲390 50		시군비 50%
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	(6,000) 5,000 =▲1,000 50		시군비 50%
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	(35,546) 30,468 =▲5,078 50		시군비 50%
실명예방사업비 지원 (※신규사업)	2,250 50	2,250 50	
노인요양원 배수로사업 (※전액 삭감)	▲14,355 67.2		시군비 32.8%
정신요양시설 취사장비 교체 (※신규사업)	3,000 50	3,000 50	

<표 5> 도비지원사업 증감내역 (사회복지국소관)

() 는 기정예산액임

<단위 : 천원>

구 분	도 비 (%)	시 군 비 (%)	비 고
◆ 도비보조사업			
자원봉사센터 운영	(52,700) 50,199 =▲2,501		자치단체 경상보조
저소득모자가정 기능공양성	(73,500) 49,000 =▲24,500	50	50
<기타사업>			
장애인체육관 신축비(부족분)	(670,000) 1,137,000 =467,000		시설비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유통탱크 교체 (※신규사업)	12,000		민간자본보조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금	(5,594,573) 5,472,085 =▲122,488		
<사회단체보조금>			
대한상이군경회 운영비	31,200		민간경상보조
(사) 월남전후유증전우회 운영비	9,000		"
충북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비	17,500		"
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비	(25,200) 33,600 =8,400		"
<기금적립금>			
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	(200,000) 100,000 =▲100,000		
노인복지기금 적립금	(200,000) 100,000 =▲100,000		
여성발전기금 적립금	(200,000) 100,000 =▲100,000		

Ⅲ. 檢討意見

1. 一般會計

□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
경정예산안 규모는

- 741억 16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 8,267만원 5천원 대비 2.0%인 14억 1,89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, 도본청 일반회계 대비 10.4%를 점유하고 있음

□ 기정예산액 대비 성질별 증감률은

- 인건비 7.9% 감액, 물건비 10.5% 감액, 자본지출 20.7% 증액 내부거래 6.8%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.0% 증액되었음
- 인건비 및 물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삭감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조정된 것이며, 자본지출은 국비지원사업의 조정
에 따라 조정된 것임
- 내부거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
도비부담 전출금이 감액된 것임

□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은

가. 국비지원사업으로

- 보건복지부소관 국비보조사업 25개사업 중
 - 신규사업 3, 증액조정 8, 전액삭감 4, 감액조정 10개사업임
- 중앙기금(사회복지사업기금) 지원사업 10개사업 중
 - 신규계상 5, 전액삭감 2, 감액조정 3개사업임

나. 도비지원사업으로

- 도비보조사업은 2개사업으로 감액계상되었음
- 기타사업은 3개사업으로서
 - 신규계상 1, 증액조정 1, 감액조정 1개사업임
- 사회단체보조금은 4종으로서
 - 신규계상 3, 증액계상 1종임
- 기금적립금은 3개사업으로 감액조정되었음

☐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
- (P 303)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4천 8백만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, 도내 작업장 운영실태와 비교하여 설명 필요
- (P 304) 대한상이군경회 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 4건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특히 사단법인 월남전후유증전우회 운영비의 지원 근거는
- (P 308) 경로당운영비 및 경로당난방비 책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는데, 감액된 사유는

2. 特別會計

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

- 277억 3,87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2,824만 2천원 대비 5억 8,950만 3천원이 감액되어 2.1%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
- 세입중 국비보조금 감액과 이에따른 도비전입금이 감액되었으며, 이에따라 세출중 의료보호비도 감액조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